대원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제정 : 2001.12.21

개정: 2002.09.01

개정: 2008.12.17

개정 : 2011.11.22

개정: 2012.06.01

개정 : 2013.09.01

개정 : 2014.11.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05.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보육센터는 "대원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08. 12. 17., 2011.11. 22., 2020. 03. 01.>

제2조(설치목적) 보육센터는 창업 및 신기술 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사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식기반형.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선진 경제 구현과 지역 발전의 일익을 담당,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보육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설 지원 <개정 2021.12.01.>
- 가. 시제품 제작 공간 및 기계 시설
- 나. 시험 분석 및 측정 장비
- 다. 회의실, 전시실, 공동작업장 등 제공
- 라. 기본 유틸리티 제공(전기, 수도 등)
- 2. 사무관리 지원 <개정 2021.12.01.>
- 가. 전화, FAX, 안내
- 나.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우편

- 다.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
- 3. 지도 및 연수, 공동 연구 <개정 2021.12.01.>
- 가. 경영 및 기술연구지도
- 나.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연구비 지원)
- 다. 대학연구소 네트워크 제공
- 라. 창업자금 및 입지 알선
- 마. 마케팅 지도 등
- 사. 연구 및 개발
- 4. 본 대학교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 지원 〈개정 2020. 03. 01.〉
- 5. 창업동아리 및 벤처클럽의 활성화 지원
- 가. 본 대학교의 창업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구성원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출장,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센터가 필요 경비의 일정부분과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 나. 본 대학교에 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본 센터의 입주를 희망할 때 입주평가 시 부적 격 사항이 없으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 다. <삭제 2020. 03. 01.>
- 라. 기타 창업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센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 6. 기타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연구실 및 창업보육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에는 각종 연구실 및 창업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 창업 교원에 대한 지원) ①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이 실험실 및 창업보육 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관련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20. 03. 01., 2021.12.01.〉
 - ② 실험실 및 창업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본교 교원에게 본 대학교와 센터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출장,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필요 경비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거쳐야 한다. <개정 2020. 03. 01., 2021.12.01>
 - ③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실험실 및 창업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본교 교원 의 경우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1. 01., 2021.12.01>
 - ④ 제3항의 교원이 창업을 위하여 본 대학교를 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 제 4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재청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 교원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4. 11. 01., 2020. 03. 01., 2021.12.01>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창업한 기업의 경우 센터 및 본 대학교에서 창업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2021.12.01>

제2장 조직 및 임원

- 제6조(조직) 보육센터의 조직은 행정지원 분야의 직원과 기술 및 경영분야의 보육닥터로 구성된다.
- 제7조(직원) ①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3, 09, 01.>
 - ② 입주업체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매니저를 두며, 안정적 근무와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장기근무를 지원하고, 전담매니저의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2인 이상의 매니저를 둘 경우 선임매니저는 입주업체의 경영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 등 운영지원에 주 임무를 두고, 차석매니저는 입주업체 선정, 운영위원회 개최, 보육센터 내 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 주 임무를 둔다.
 - <개정 2013. 09. 01., 2020. 03.01., 2021.12.01.>
- 제8조(보육닥터) 보육센터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1개 업체당본 대학교 교원 중 1인 이상의 보육닥터를 지정한다. <개정 2020. 03. 01.>
- 제9조(보육닥터의 지도 의무) ① 보육닥터는 입주업체에 대해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09. 01.>
 - ②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 해결을 위하여 행정직원은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문요 청 시 경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교수에 즉시 연락한다.
 - ③ 경영 및 기술지원을 요청 받은 교수는 자문요청 시 입주업체의 애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한다.
- 제10조(보육 인센티브) ① 입주업체와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교내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창업보육센터 기술.경영지도에 따른 결과물을 연구실적이나 업적평가에 반영할 수있다.
 - ③ 보육센터장의 창업보육센터 보육성과는 사회봉사 및 연구실적등에 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원논총에 논문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 09. 01.>
 - ④ 보육매니저는 입주업체의 보육성과에 따라 승진 및 승급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9. 01.>

제3장 운 영 위 원 회

-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01.>
 - ①의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 연구원, 법인 이사, 유관기관 전문가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2. 06. 01., 2020. 03. 01., 2021.12.01>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개정 2021.12.01.>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삭제 2013. 09. 01.>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 1.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개정 2020. 03. 01.>
 - 2.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개정 2020. 03. 01.〉
 - 3. 입주업체 모집 다만, 입주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실시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6. 01.. 2013. 09. 01.. 2020. 03. 01.. 2021.12.01.>

- 4. 입주업체 지원 <개정 2020. 03. 01.>
- 5.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한 사항

제4장 재 정

- 제12조(재원) ① 보육센터 운영 및 증개축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소기 업청 출연금,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 대학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11. 01.〉
 - ② 보육센터의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입주업체의 관리비 연차별 차등징수, 보유기자재의 외부활용유료화, 타사업과 연계한 수입금 징수, 성공불제의 활성화, 기타 가능한 수익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엔젤운영) 보육센터사업자, 보육센터 입주한 개인이나 업체 및 관련단체는 보육 중인 업체나 졸업한 업체 중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엔젤을 출연할 수 있으며,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센터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등)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자본이득 발생에 대한 처리)

- ① 공동 출자의 경우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01.>
- ② 독자 출자의 경우에는 상호협의 조정기구를 거쳐 호혜적으로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츠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츠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초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